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41
----------	-------

발의연월일 : 2025. 7. 17.

발 의 자 : 백혜련 · 조계원 · 박지원
이수진 · 서미화 · 서영석
진선미 · 민병덕 · 김한규
박희승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직원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 교육이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전문교육의 내용에 해당 사항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교육의 내용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유가족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제도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운영 및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을 “운영, 특수기동구조대의 편성과 파견 및 유가족통합지원센터 구성·운영”으로 한다.

③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 신원 확인, 비상물품 전달 등 그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 현장에 유가족통합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제29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전문교육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피해 실태 및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5조의5(유가족전담공무원)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전담 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유가족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
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② ~ ④ (생략)

<신설>

<신설>

은 사람에게 대한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8조의2(실태조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피해 실태 및 회복 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5조의5(유가족전담공무원)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그 유가족에게 각종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담당직원(이하 이 조에서 “유가족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유가족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심리적 응급 처치에 관한 사항

2. 지원사항 안내 및 지원금 신

	<u>청 등의 행정처리에 관한 사항</u> <u>3. 장례 절차에 관한 사항</u> <u>4. 그 밖에 유가족의 정상적 생활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u>
--	---